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오뚜기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고, 계약 종료 이후 하도급거래 적법성의 사후 검증을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1) ㈜오뚜기는 3인 이상의 임직원(하도급관련업무 담당부서 임원 포함)으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운용한다.
- (2)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 하도급거래 관련 임원 (ESG추진팀이 소속된 조직의 담당 임원)
 - ② 위원 - 하도급 관련 업무 임직원
 - ③ 간사 - 하도급 관련 업무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ESG추진팀장)

제3조 (위원회의 운용)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업무를 심의한다.

-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업체별 당해사업년도 수급사업자별 하도급거래 (예상)금액이 5%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사전 심의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2) 협력업체 등록기준,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사전 심의
- (3)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
- (4) 기타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사항

제5조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후 조치)

- (1) 내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는 자진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 (2)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제7조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

제4조 제1항의 계약이 종료되면 내부 심의위원회는 해당 하도급거래의 적법성을 사후 검증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의 사후 검증사항 예시>

- ① 지급기한내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②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제8조

사후 검증을 위한 세부절차는 <별지1>에 의하고, 사후 검증시 확인할 사항은 <별지2> 체크리스트에 의한다.

제9조

내부 심의위원회의 사후 검증 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는 자진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부 칙 (2013.10.7.)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7.)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1.12.27.)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12.12.)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4.12.1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절차



1. 하도급거래가 종료되면 해당 부서는 계약종료 사실을 ESG추진팀에 통보한다.
2. ESG추진팀은 하도급거래 계약 종료된 사항을 차기 내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하도급거래 계약종료 건에 대해서 계약종료의 타당성 및 종료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의하고 사후검증 위원2인을 선임한다.
4. 사후검증 위원은 내부심의위원 중 ESG추진팀1인과 해당 하도급거래와 관련성이 없는 부서의 내부심의위원 중 1인을 선임한다.
5. 선임된 사후검증위원은 해당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 면담을 통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내부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지2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체크리스트

업체 명:

검증일:

구분	부서	직급	이름	서명
오뚜기				
협력사				

번호	검증항목	검증결과			비고 (특이사항)
		O	X	해당없음	
1	계약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는가?				
2	계약 종료 이전에 원사업자로부터 계약 종료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가?				
3	계약 종료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부당한 전가가 없었는가?				
4	계약 종료 이후 수급사업자 소유의 지식재산권 및 제조 핵심기술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5	계약 종료 이후 원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지속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핵심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 받지 않았는가?				
6	계약 종료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손실 보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 받지 않았는가?				
7	계약 종료 이후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이 지급 기한 내에 지급 완료되었는가?				

8	기타 사후 검증위원 의견
---	---------------